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악취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근거 마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8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악취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0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악취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강화된 악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악취배출허용 기준,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¹⁾

1)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관리 외에도 동법 제8조의2²⁾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련 민원 “신고대상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2) 「악취방지법」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악취방지관리 체계]

	악취 관리지역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근거	제6조	제8조의2
내용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특정 시설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
지정 요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시설
주요 의무	해당 지역 내 모든 배출시설 운영자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	지정된 해당 시설 운영자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제출

2024년 12월 기준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은 6,300개소,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관리시설은 188,442개소(신고대상시설 83개소, 신고시설 외의 시설 188,359개소)임.

[악취배출시설 신고 현황(2024.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악취 관리지역	악취 관리지역 외		
		소계	신고시설*	신고시설 외
시설수	6,300	188,442	83	188,359

참고로, 2024년 기준 전국 38,438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30,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

[전국 지방자치단체 악취민원 발생 현황]

구분	악취민원 발생 현황(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39,902	39,397	33,592	39,457	38,438
서울	1,160	1,246	1,441	2,040	2,438
부산	1,817	1,818	1,255	1,432	1,282
대구	1,182	1,411	700	1,973	1,217
인천	2,900	2,172	1,850	1,856	1,667
광주	446	530	367	830	589
대전	1,404	670	814	1,295	676
울산	725	702	685	763	631
세종	145	116	167	347	163
경기	7,775	9,620	6,413	6,418	5,919
강원	791	972	1,025	972	1,285
충북	1,386	1,337	1,409	1,490	1,285
충남	2,962	5,373	3,399	4,737	5,572
전북	1,832	2,272	2,471	3,895	3,681
전남	2,285	1,852	1,717	2,051	2,683
경북	3,136	2,039	2,693	2,704	2,485
경남	8,421	5,295	5,495	4,568	4,311
제주	1,535	1,972	1,691	2,086	2,554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악취측정 데이터 현황, 행정처분 및 검사 결과 등 데이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광역적 악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악취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할 경우 악취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에 따라 전국 악취 관련 데이터를 연계·통합하고 일부 정보는 민간에 개방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³⁾’ 설치를 현재 추진 중으로, 시스템의 법적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 **사업 목적** : 전국의 악취 민원과 행정처분, 배출시설 정보, 검사 결과 등을 지도(GIS) 기반 플랫폼에 통합해 빅데이터화

· **주요 사업 내용** : △전국 악취배출시설 DB 구축 △지자체별 악취 민원 건수와 지도·점검 DB 구축
△악취오염 통합 예측 체계 구축

[한국환경공단 악취통합관리시스템4)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악취관리정책의 과학적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악취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시설 현황, 악취민원 내역, 악취검사 및 행정처분 결과 등

- **(사업기간)** '23년 ~ '25년(3년) ※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完
- **(예산규모)** 총 50억원('23년 14.5억원, '24년 21.3억원, '25년 14.2억)

□ 주요 사업내용

- **(1단계) 악취민원관리시스템**(구축 완료, '23.11월 ~ '24.5월)
 - 악취민원 접수·처리·통계 등 악취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T 인프라 구축, 정보보안체계 구축 등
- **(2단계) 악취배출원관리시스템**(구축 완료, '24.1월 ~ '25.10월)
 - 배출사업장 (변경)등록,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이력 관리 구축, 민원 정보(1단계)와 연계하여 체계적 사업장 관리 및 정보 제공
- **(3단계) 악취측정/모니터링시스템**(구축 예정, '25.12월 ~ '26.10월)
 - 악취검사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악취측정·분석 결과의 통합관리 및 악취확산 영향 분석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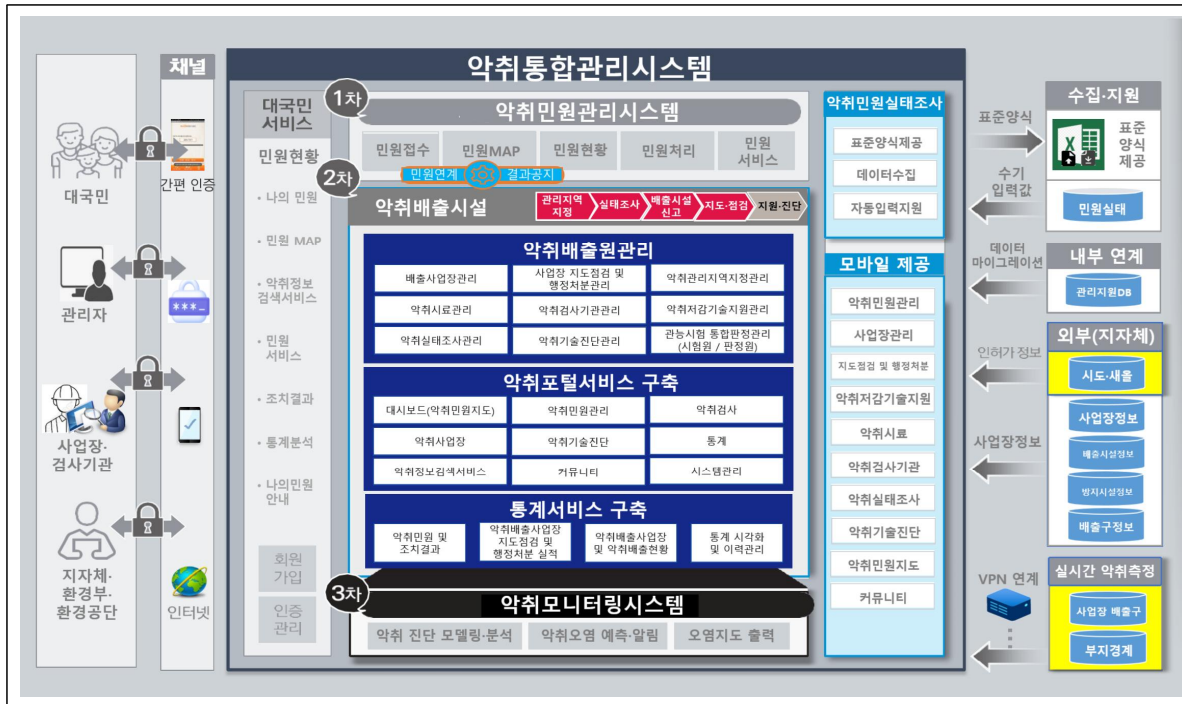
-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완료에 따른 악취배출원관리시스템 시범운영('26.1월~) 및 운영·관리(계속)

4)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사업코드 : 1633-303) 중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ISP 수립)'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결산 현황]

구분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기후에너지환경부	1,455	1,455	2,131	2,131	1,416	1,416
한국환경공단	1,455	1,431	2,131	2,082	1,416	1,406

□ 약취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주요 기능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3개 시도, 59개 지역)

‘26년 1월

NO.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1	울산	남구, 북구, 동구	20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3			2009-09-0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산405-3	
4		2014-02-0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11개필지)		
5	경기	평택시	2005-05-1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송지구	
6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
7				반월국가산업단지	
8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9		오산시	2011-0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10		화성시	2016-12-05	발안산업단지	
11		평택시	2018-02-13	평택일반산업단지(세교)	
12		평택시	2023-08-23	독곡동 일원 4필지(축사2개소)	
13		용인시	2018-06-04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일원(축사 47, 레스피아)	
14	충남	서산시	2006-1-20 (2020-7-6통합)	대산공업단지(3곳) - 대산일반산업단지 - 대산B일반산업단지 - 대죽일반산업단지 -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 대죽자원비축국가산업단지 -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 씨지앤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 - 독곶리 1 외 - 대죽리 10-1 외	
15		당진시	20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16				송산일반산업단지	
17		보령시	2024-03-26	연차리 342-8 외 11필지 연차리 342-4 외 1필지, 연차리 348 외 4필지	

18	인천	남동구	2006-01-24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동 고잔동 지역
19		서구		서부지방산업단지
20				기좌동·석남동 원창동 지역
21				백석·오류동 일원
22			2012-10-02	검단일반산업단지
23		동구	2011-12-13	화수동 일원
24			2012-10-02	송현동 일원
25		부평구	2015-08-24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26		중구	2016-12-12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27		미추홀구	2018-11-05	인천지방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28			2018-11-05	인천기계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29	부산	사하구	2006-04-26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
30	전북	완주군	20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31			2025-05-30	비봉면, 고산면 일원 (백도리 41개, 울곡리 1개 필지)
32		익산시	2014-01-24	익산제1산업단지
33				익산제2산업단지
34		진안군	2024-05-03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35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36	대전	대덕구	2008-01-01	대전 1,2산업단지 등
37				대전 3,4산업단지 등
38	강원	영월군	2008-0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7개필지)
39		원주시	2024-04-09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40		철원군	2024-04-09	철원군 동송읍 오재리 및 장항리 일원
41			2025-10-31	철원군 동송읍 오재리 일원
42	경북	의성군	2008-12-0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43		경주시	2022-05-12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44		포항시	2025-06-04	포항철강산업단지 일원 (남구 괴동동 106-1 외 32필지)
45	경남	창원시	2013-07-01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46		김해시	2020-02-17	주촌면 선지리 214 외 26필지
47				주촌면 원지리 116 외 39필지

48			2020-10-13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
49			2021-07-09	진영·본산리준공업지역
50			2021-01-01	칠서일반산업단지
51		함안군	2023-05-08	함안면 괴산리 673번지 외 57필지(양돈시설 11개소)
52	전남	여수시	20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53		여수시	2019-05-02	여수국가산업단지
54		여수시	2019-05-02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55		영광군	2026-01-08	군서면 만곡리 일원(4개소)
56	제주	제주시	2018-03-23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노형동 등(축사 53)
57		서귀포시	2018-03-23	대정읍, 남원읍, 중문동 등(축사 6)
58		서귀포시	2019-07-19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지역 44개 약취배출시설(양돈 축산시설)
59	대구	서구	2024-06-01	대구염색산업단지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